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나6037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나6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52208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유진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현

변론 종결2024. 9. 10.

판결 선고2024. 11. 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522081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제20행의 '1. 28.'을 '1. 18.'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7쪽 제19행의 맨 앞에 아래와 같이 추가.

"계약 내용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바, 인정 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제7조의
제목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사실, 원고도 2022. 7. 19. 피고와의 통화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을 계약금액 1억 원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8쪽 제4행의 마지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원고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받아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송영환

판사김동현

판사이상아